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

※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25.)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당자)	기존주택처분관련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3 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 3항 출산특례 당첨자 제출 [양식] 당사 견본주택 비치, 해당자에 한하여 서약서 작성 예정
필수서류	확약서, 서약서	본인	[양식] 당사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당첨자 본인확인용(모바일 신분증 불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용(본인발급),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용도(직접 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제기동역 아이파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세대원 모두 뒷자리 전부표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본인	90일 초과 국외거주사실 확인(단신부임은 입증서류 및 세대원 전원 제출)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배정기준표	-	[양식] 당사 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관계, 발생일·변동사유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입증받기 위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세대 이상으로 포함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로 산정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현재 국내 의료 기관명과 임신주차, 담당자의사명, 의사번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양식]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 명시)
	위임장	-	[양식] 당사 견본주택 비치(당첨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용도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위임용(본인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대리인 본인확인용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부적격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소명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 단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함. 또한,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